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혜지 의원 외 25명

나. 의안번호 : 제2192호

다. 제출일자 : 2024. 10. 16.

라. 회부일자 : 2024. 10. 18.

2. 제안사유

-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수가 차이가 커 대중교통 이용 편익의 상대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제1호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23. ~ 2024. 10. 2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 지역에 대한 접근성 보완을 위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분석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의

1) 교통정책과-8231호('24.11.6.)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 분석’과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의 접근성 보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도시철도 11개 노선²⁾ 및 337개 역사, 시내버스 393개 노선 및 마을버스 252개 노선, 정류소 6,640개소³⁾를 운영중에 있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있음
- 서울연구원 보고서⁴⁾에 따르면 ‘서대문구, 종로구 북측지역, 강남·서초구 외곽지역, 권역별/자치구별로는 서남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 도시철도 운영현황(서울시, 시정통계 '24년 7월)

호선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우이신설	신림선	계
	1	2	3	4	5	6	7	8				
역수	10	50	34	26	56	39	42	18	38	13	11	337

3) 정류소 현황(서울시 자료, '24년 9월)

총 계		가 로 변		중 앙 차 로		환 승 센 터		스 마 트 션 터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정류소	승차대
6,640	4,522	6,234	3,515	375	939	18	33	13	35

4)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2021.11.1. 정책리포트 제333호) p3

대중교통 이동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 이용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간 대중교통 접근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시책 평가시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를 평가고려사항⁶⁾으로 반영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⁷⁾으로 도보 5분 이내의 대중교통 접근 체계 마련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면목선 등 도시철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지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7) 제327회 정례회 교통실 업무보고 p37

- 아울러 서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 현황파악을 위해 접근성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도 및 지표 선정, 목표설정, 현황조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함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